종 합 감 사

감 사 보 고 서

- 심사보호국 -

2025. 1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 3

Ⅲ. 감사결과 ····· 5

1. 감사결과 총괄 ·····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8

(1) 비위면직자 관계 기관장의 고발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개선·권고) ····· 9

(2) 부패·공익신고 보상금등 지급업무 개선(시정·주의·개선) ··· 19

(3)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부적정(개선) ····· 34

(4) 비전자 신고기록물 기록관 이관규정 미준수(시정·주의) ····· 50

(5)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미흡(주의) ····· 61

(6)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시정) ····· 65

(7)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시정) ····· 70

(8) 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영수증 실명 서명 규정 미준수(주의) ····· 74

(9)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개선(통보[모범사례]) ····· 77

(10) 공공기관 실무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법령설명회' 추진 (통보[모범사례]) ····· 82

(11) 각급기관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강화 지원(통보[모범사례]) ····· 85

(12)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홍보 강화(통보[모범사례]) ·· 88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심사보호국의 조직과 주요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심사보호국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주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2021. 11월부터 2025. 6월까지 심사보호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요인 유무 확인, 지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본 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부서인 심사보호국에 2025. 8. 25.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 대상 자료를 2025. 9. 8.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2025. 9. 18.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감사대상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2025. 10. 10.부터 11. 24.까지 32일간 감사반장인 감사담당관 포함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제출된 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검토,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25. 12. 5.부터 12. 19.까지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개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2025. 12. 2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1. 임무와 기능

심사보호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공익침해행위 등의 신고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과 인력 현황

심사보호국은 [그림 1]과 같이 2025년 6월 말 현재 1국, 6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74명이며, 현재 인원은 7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심사보호국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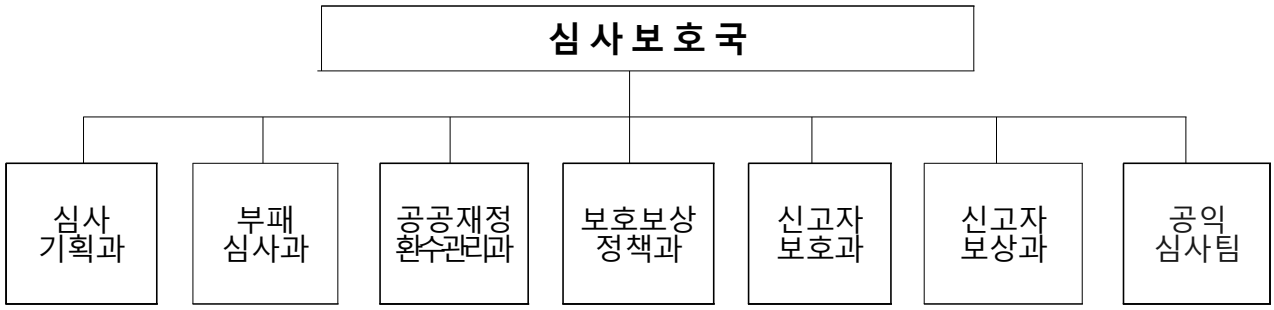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고공단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이하	전문경력관	특정직
정원	74	1	-	2	5	5	21	33	6	-	1
현원	72	1	-	4	2	8	26	22	8	-	1

3. 예산 현황

심사보호국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표 1]과 같이 52억 2천5백만원으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5억 8천2백만원(49.4%), 공익신고제도 운영 22억 4천2백만원(42.9%),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4억 1백만원(7.7%) 등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2025년도 심사보호국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5,910	**5,225**	**△685**	**△11.6**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33**	**2,582**	**△651**	**△20.1**
일반수용비(210-01)	30	30	-	-
사업추진비(240-01)	5	5	-	-
포상금(310-03)	3,198	2,547	△651	△20.4
공익신고제도운영	**2,242**	**2,242**	-	-
일반수용비(210-01)	70	71.2	1.2	1.7
사업추진비(240-01)	7	5.8	△1.2	△17.1
포상금(310-03)	2,165	2,165	-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435**	**401**	**△34**	**△7.8**
인건비(110-03)	29	29	-	-
일반수용비(210-01)	112	121	9	8.0
임차료(210-07)	12	10	△2	△16.7
여비(220-01)	119	113	△6	△5.1
사업추진비(240-01)	8	7	△1	△12.5
포상금(310-03)	150	115	△35	△23.3
고용부담금(320-09)	5	6	1	20.0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결과, [표 1]와 같이 총 13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를 요구하고, 4건의 모범사례는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전파·공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1] 감사결과 현황

구분	합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사례)
건수	17	4	5	3	1	4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심사보호 분야 일반

❶ (**비위면직자 관계기관장의 고발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사실 확인 후 고발조치 요구했으나, 소속기관장 등 관계 기관장이 취업제한조치를 미이행

⇒ 「비위면직자 지침」에 규정된 고발조치 요구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률 등으로 상향입법 추진**(개선)**

- 해임요구 및 고발 등 조치에도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업이 경영상 필요를 명분으로 해임 및 과태료 납부 요구 미이행

⇒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강제력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으로 개선 방향 모색**(권고)**

❷ (**부패·공익신고 보상금등 지급업무 개선**)

-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 내 보상금등 지급결정 및 기간 도과 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보·포상 사무 운영지침」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미이행

⇒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지급결정 미통지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추가통지 조치 및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시정)**

- 위원회 자체 검토과정에서의 오류 등 내부 요인에 기인한 오지급 및 과다지급에 따른 미회수 등 사후처리 부적정

⇒ 보상금등 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과다 지급된 사안은 조속한 시일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주의)** 및 청렴포털시스템 개선·보안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업무 전반 개선 대책 마련·정비**(개선)**

❸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부적정**)

- 법률상담·대리신고가 특정 소수 변호사들에게 집중되어 실적이 없는 나머지 변호사들(70%)은 연임 판단 시 무실적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쏠림현상(약 80%)으로 일부 지역에는 자문변호사가 부재

- 대리신고의 경우만 실무심의회 상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법률상담만 한 경우에는 임의 선지급 후 사후에 보고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지급 처리

⇒ 특정 변호사로 집중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자문변호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수당 중복지급 방지 등 합리적 상담수당 지원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개선)**

❹ (**비전자 신고기록물 기록관 이관규정 미준수**)

- 신고사건 조사결과는 처리부서가 2년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

⇒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관시기 준수**(주의)**

- 각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사건처리결과와 보존기간을 규정에 맞게 설정하고, 사건처리일자를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이를 미준수

⇒ 잘못 표기된 사건처리결과와 보존기간을 정정하고, 누락된 사건처리일자를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재송부**(시정)**

나.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❶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부적정**)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하나, 이를 미준수(97건)

⇒ 향후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토록 조치**(주의)**

❷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감액하지 않는 등 출장일비를 지급(23건)하고,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한 경우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해야 하나 감액 없이 지급(62건)

⇒ 과다하게 지급된 883,850원은 환수하고, 출장비 정산 시 차량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시정)**

❸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하나, 2시간 미만 근무자나 정규근무시간 내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 지급(91건)

⇒ 잘못 지급한 655,000원에 대해 환수하고, 특근매식비 지급 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시정)**

❹ (**정부구매카드 영수증 실명서명 관련 규정 미준수**)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부구매카드 관련 규정 미준수(6건)

⇒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에는 사용자 실명을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 철저 **(주의)**

다. 적극행정 등 모범사례

❶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개선**)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3개 과제(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수산종자 방류사업, 스마트시티 조성 보조사업) 선정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적발로 공직사회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모범사례, 통보)**

❷ (**공공기관 실무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법령설명회 추진**) 공공기관 현장·실무자 대상 권역별 법령설명회를 통한 통합교육 체계 구축 및 기관별 안정적 제도 운영(총 1,450기관, 2,362명)**(모범사례, 통보)**

❸ (**각급기관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부정수급 적발·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정책지원으로 자율적 예방 역량 제고('25 하반기 부정수급 환수액 전년동기대비 164억원 증가) **(모범사례, 통보)**

❹ (**신고자보호·지원제도 교육·홍보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25년 기준, 총 806개 기관 1,200명)**(모범사례, 통보)**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도 첨부자료 참조(뒷면부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권고 및 개선요구

제　　목　비위면직자 관계 기관장의 고발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과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및「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9조 내지 제92조의2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취업자의 해임요구(이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는 [그림 1] 과 같이, 서면점검, 현장점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제재대상자 확정을 거쳐 위반자를 해임·고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확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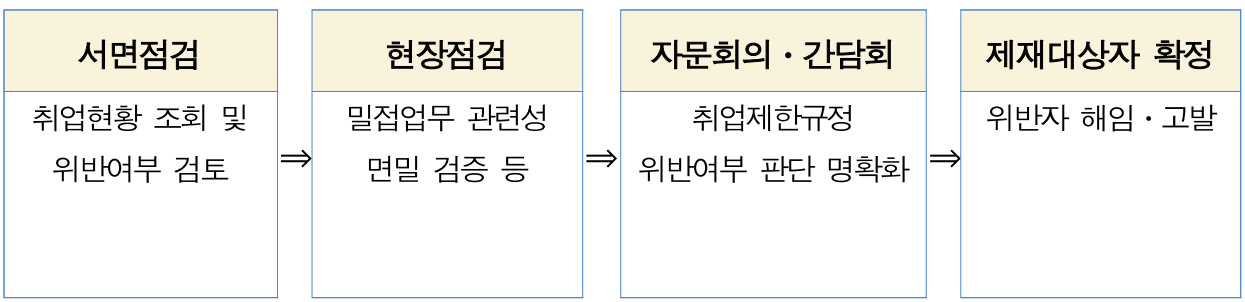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은 ‘비위면직자등’ 이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로 정의한다. 같은법 제82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이들과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일정 기준의 취업대상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면직자등’ 을 확인한 후에는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처리되는데,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의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의 장’ 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 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재규정인 같은법 제89조는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또한, 우리 위원회는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사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이하 '비위면직자 지침'이라 한다)을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비위면직자등 제재를 위해「비위면직자 지침」제10조는 우리 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제1항),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중 발생한 비위면직자는 총975명이다. 기관유형별로는 [표 11과 같이 공직유관단체가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216명, 지방자치단체가 202명, 교육행정기관이 66명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로는 [표 2]와 같이 금품·향응수수가 369명으로 가장 많고, 공금횡령·유용 231명, 직권 남용·직무유기 82명, 문서 위·변조 34명, 기타(공무상 비밀누설,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등) 259명으로 나타났다.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업체 유형별로는 [표 3]과 같이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87건, 부패행위관련기관이 10건, 업무관련영리사기업체등이 107건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2021년 ~ 2025년 상반기)

(단위: 명)

구 분	계	'21.	'22.	'23.	'24.	'25.上
합 계	**975**	**214**	**202**	**202**	**201**	**156**
중앙행정기관 등	216	47	39	32	52	46
지방자치단체	202	48	46	45	28	35
교육행정기관	66	17	21	12	10	6
공직유관단체	491	102	96	113	111	69

[표 2]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등 현황(2021년 ~ 2025년 상반기)

(단위: 명)

구 분	계	'21.	'22.	'23.	'24.	'25.上
합 계	**975**	**214**	**202**	**202**	**201**	**156**
금품·향응수수	369	72	70	63	112	52
공금횡령·유용	231	53	43	52	48	35
직권남용/직무유기	82	20	12	22	8	20
문서 위·변조	34	10	8	9	3	4
기타	259	59	69	56	30	45

[표 3]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 현황(2021년 ~ 2025년 상반기)

(단위: 건)

구 분	계	'21.	'22.	'23	'24.	'25.上
취업제한 위반	**204**	**52**	**35**	**47**	**48**	**22**
공공기관 취업	87	16	14	24	17	16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	10	5	1	1	1	2
업무관련영리사기업체등 취업	107	31	20	22	30	4

< 고발 요구 미이행 >

일반적으로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조치요구를 관계기관의 장이 수용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 중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아닌 우리 위원회가 직접 고발한 사례가 총 3건 있었다. 이는 우리 위원회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법령 위반자를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도록 한 현행 「비위면직자 지침」 제89조 규정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사기관인 ○○청 소속 직원 甲이 재직 중 향응수수를 이유로 해임 면직된 후,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이다. 2021. 12월 우리 위원회는 위반자 甲의 퇴직 전 소속기관인 ○○청에 고발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관은 수사 등 기관 특성 등을 이유로 고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청은 「비위면직자 지침」 제10조의 소속기관의 장에 소속 지방관서장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 불응하면서 처리를 지체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방관서장이 아닌 대표 기관장이 고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위반자 고발조치를 거듭 요구하였으나, ○○청은 2022. 6월 최종 불응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약7개월이 지난 2022. 7월에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위반자 甲을 직접 고발조치하였다.

두 번째는 공직유관단체 ㈜○○○○ 乙 팀장이 재직 중 금품과 향응수수 등으로 해고된 후,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이다. 2021. 12월 우리 위원회는 위반자 乙의 퇴직 전 소속기관인 ㈜○○○○에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으나, 해당 기관은 회신 없이 계속 방치하면서 고발을 불이행하였다. 2022. 2월 ㈜○○○○이 민간기업에 매각·양도되어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후, 같은해 4월이 되어서야 감독기관인 ○○○○○공사가 고발요구 이행 불가를 회신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해 7월 위반자 乙을 직접 고발조치하였다.

세 번째는 ○○청 소속 직원 丙이 재직 중 금품등 수수를 이유로 해임 면직된 후, 우리 위원회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이다. 2022. 7월 우리 위원회는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위반자 丙의 퇴직 전 소속기관인 ○○청에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은 이를 계속 방치 및 불이행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해 여러 차례 유선 연락 및 9월·10월 2회의 공문 발송으로 설득했으나, 해당 기관은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 위원회가 직접 고발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수사기관 특성 등을 명목으로 고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거부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 결국, 해당 사안에서도 약6개월이 지난 2022. 12월이 되어서야 관계 기관의 장이 아닌 우리 위원회가 위반자 丙을 직접 고발조치하였다.

살펴보건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제82조), ▲공공기관에 취업 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 및 부패행위 관련기관 등 취업 시 관계 공공기관장에 대한 취업해제조치 강구 요구 사항(제83조), 및 ▲벌칙규정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8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비교하여, 취업제한 위반 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비위면직자 고발조치 요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즉, 우리 위원회 예규(「비위면직자 지침」)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효력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해, '관계 공공기관의 장'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일부 기관에서 문제 제기(첫번째 사례)하는 것과 같이 위반자가 퇴직자이고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 그 소속 지방관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이 미이행 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점 등은 비위면직자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선 3건은 관련 기관·단체들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실증적 사례에 해당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할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이므로, 현행 법령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과태료 미납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에는 비위면직자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위면직자의 원 소속기관이 취업해제조치강구를 요구하는 경우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은 원 소속기관과의 관계성 내지 과태료 부과 회피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편이나, 비위면직자를 채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취업기관(기업)이 해임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는 2022. 7월 위원회 의결로 원 소속기관인 ○○○○○○의 장에게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 강구 및 고발을 요구하였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기관(기업)에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고발조치도 함께 이행하였다. 이후 위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벌금형도 확정되었으나, 해당 기업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해당자를 해임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당 기업 대표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끝내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았고(현재는 퇴사), 과태료 미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위면직자 채용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 가산금(30만원), 중가산금(312만원=12만원*26개월) 포함 1,342만원 부과 ('25.9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 ☆☆☆☆과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법령 개정 등 재정비 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장은 비위면직자 제도의 이행력 확보 및 고발조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비위면직자 지침」에 규정된 고발조치 요구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다만, 과태료 미납 관련 사항의 경우 민간부분에 대한 조치와도 연계되어 있어 강제력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시장질서 침해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부 검토·전문가 자문·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 주의 및 개선 요구

제　　목　부패·공익신고 보상금등 지급업무 개선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8조 내지 제70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5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3조 등에 따라 '신고자 보상'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부패[1]·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고자 보상·포상제도는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위험부담을 안고 실행한 용기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패방지 및 공익침해 예방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

1)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이하 기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각각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자)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를 모두 포함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은 모두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다. 개략적으로는 보상금은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국가·지자체 포함)의 직접적 수입 증대나 회복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며, 구조금은 신고로 인한 발생한 피해나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관계법령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포상금 지급사유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 제1항은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유로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제8항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1항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모두 최대 5억 원 이하로 한다.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은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제15조제6항, 제8항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2항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은 모두 최대 30억 원 이하에서 보상 대상 가액의 4~30%로 규정하고 있다.

구조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은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제15조제7항, 제8항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3항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유로는 모두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허가 등 취소나 행정적 불이익과 계약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0. 생략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이하 생략)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이하 생략)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이하 생략)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생략)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은 모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보상금의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제70조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4항도 내용은 동일하다.「청탁금지법」제15조 및「공공재정환수법」제24조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관련 지침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이하 '부패 보·포상지침'이라 한다)」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일 또는 포상금 추천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이하 '공익 보·포상지침'이라 한다)」제36조제1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이하 '부패 구조금 지침'이라 한다)」제19조제1항 및「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이하 ' 공익 구조금 지침 '이라 한다)」제19조제1항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은 90일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 지침에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신고자 등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부패 보·포상 지침」제38조제2항은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 또는 위원회 소관부서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포상금 추천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 또는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부서에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6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부터 또는 포상금 추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이나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해당 신청인과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상금 운영지침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상금 운영지침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보상금 상환을 요구(기한 3개월)할 수 있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구조금 지급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는 등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2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제1항) 반환요구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보상금 등 지급결정 기한 도과 시 신고자 통지 미흡 >

우선,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 보·포상지침」 등 앞에서 본 관련규정과 같이, 보·포상금 지급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 등을 신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중 보상금 등 지급 신청된 전체 525건 가운데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90일이 도과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은 총315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상금 지급신청 건은 최종적인 처리에 477일이 걸렸다. 90일 도과한지 387일이나 지나서 기각처리하는 등 미통지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 1] 감사대상기간 중 지급결정 기간(90일) 도과 사실 미통지 현황

(단위: 건)

연도	보상금등 지급신청 건수	보상금등 지급신청 건수			90일 도과 미통지
			인용	기각	
계	**525**	**525**	**406**	**119**	**315**
2021.11월~	48	48	37	11	42
2022	260	260	224	36	131
2023	133	133	84	49	77
2024	70	70	51	19	54
~2025.6월	14	14	10	4	11

[표 2] 감사대상기간 중 90일 도과 사실 미통지 상위 5건 및 처리결과

(단위: 건)

연번	처리일	경과일	처리결과 (보상금등 지급여부)
1	477	387	기각
2	466	376	인용
3	452	272	인용
4	452	272	인용
5	361	271	기각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우 보상금 처리기한 90일 경과 후 연장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2)]

< 보상금등 오지급 시 반환 등 사후처리 부적정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보상금등 산정 시, 신고의 적법성, 해당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 간의 직접적 연관성,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한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철저히 살펴 잘못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중 총9건의 오지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3] 감사대상기간 중 보상금등 오지급 현황

(단위: 건)

연번	오지급 연도(년)	오지급 사유	귀책	반환요청 금액(원)	반환요청 연도(년)	반환 여부
1	2022	- 최초 지급결정 당시 신고자 2인 경합 사실(5:5) 미인지 - 특정 신청인에게 100% 지급	내부	19,892,000	2024(최초) 2025(분납결정)	15,292,000원 반환완료 잔액반환예정
2	2022	- 동명의 타인에게 오지급 후 실제 원신청자에게 재지출	내부	4,913,000	2023	전액 반환완료
3	2022	- 관계기관에서 환수결정금액 수정 통보 (소송 후 보조금 취소 및 재처분내용 누락)	외부	324,000	2023	미반환
4	2021	- 관계기관에서 감액처분에 따른 환수결정금액 변동 통보	외부	164,500	2023	전액 반환완료
5	2023	- 지급 시 보상대상가액 과다산정	내부	8,612,000	2024	전액 반환완료

2) 다만, 이에 대해 ★★★★과는 당시 보상금 신청건수가 많았고, 업무담당 인력도 부족했으며 미처리된 장기안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1인이 100여 건의 보상금을 신청한 사안도 있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다고 소명한다.

연번	오지급 연도(년)	오지급 사유	귀책	반환요청 금액(원)	반환요청 연도(년)	반환 여부
6	2022	- 관계기관의 환수 경위 및 내역 오회신 (타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까지 포함)	외부	635,000	2024	전액 반환완료
7	2024	- 지급결정 전 신고자가 보상금신청을 취소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지급결정	내부	5,283,000	2024	전액 반환완료
8	2024	- 타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 미인지	내부	515,000	2025(최초) 2025(분납결정)	미반환
9	2024	- 관계기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보상금 지급신청 처리자료 오회신	외부	163,000	2025	미반환

살펴보건대, 보상금등 오지급 유형은 크게 ▲우리 위원회 자체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잘못 처리하는 등 내부 요인에 기인한 경우(청렴포털시스템 기능상 지원 미흡, 신청인의 미고지 등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공공기관의 과실·오류나 행정소송으로 환수금액이 변경된 후 이를 우리 위원회에 고지하는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표 3]에서 연번 1, 2, 5, 7, 8은 내부 요인 즉, 전자에 해당되고, 연번 3, 4, 6, 9는 외부 요인 즉, 후자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향후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관계 공공기관에 신중한 검토를 독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예방 장치를 강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한단계 높은 검토 과정을 통해 오지급 방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8번 사례의 경우, 검토 당시 청렴포털시스템상 보상신청 건 상정 처리 목록 화면에서는 우리 위원회 보상업무 담당자들이 신청인의 보상금등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로 보상금 지급 심의·의결이 진행되던 중, 신청인이 갑자기 보상금등 신청을 취소하였는데, 우리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지급하지 말아야할 보상금을 오지급하였다. 다행히,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보상업무 담당부서(★★★★과)는 시스템 총괄부서(☆☆☆☆과)와 협의를 거쳐 보상금등 취소여부를 업무담당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상 표출메뉴를 개선하였고, 현재, 보상금 반환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상금등 오지급은 예산 누수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면밀하고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오지급 발생 횟수를 근본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계부서 의견 신고자보상과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상금등 지급결정 기한 도과 시 신고자에 대해 반드시 통지하고, 보상금등이 오지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등 지급결정 지연사실을 미통지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 통지 조치하시고 더 이상 신고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또한, 보상금등 오지급 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금액 산정이나 지급 대상자 확정 시 더욱 유의하시고, 과다 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분노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반환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청렴포털시스템 개선·보완, 안내강화 등을 통해 보상금등 지급업무 전반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선 요구

제　　목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부적정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도입(2018.10.18.)된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2022.6.8.),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2022.7.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2024.9.27.)로 확대되어 왔다.

심사보호국 ◎◎◎◎과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청탁금지법」제13조의2,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그림 4]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1]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 흐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 위촉 및 명단 게시(홈페이지)

⬇

(내부신고자) 법률상담 또는 대리신고 신청(이메일)

⬇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또는 대리신고 수행

⬇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수당신청 및 지급

[그림 2]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 일부

자문변호사 명단

STEP 1. 유의사항 체크 | STEP 2. 서식 다운로드 | STEP 3. 자문변호사단 명단 공개

- 이메일 상담신청이 원칙입니다. 유선 또는 대면상담은 자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소속 지역회는 참고용이며, 상담신청자가 속한 지역에 관계 없이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내부 신고자만 이용 가능하며, 자문변호사 1명을 지정하여 상담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성명 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회	희망상담분야(세부분야)	주요 경력	이메일 주소
1		서울	건강, 안전, 공정한경쟁	▪ (전문분야자격) 형사법, 세무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서울시 불공정피해 법률상담관 ▪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2		서울	모든분야	▪ (전문분야자격)부동산권리분석사, 부부심리상담사, 군심리상담사, 병원행정관리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보유 ▪ 前 법무법인(유한) 한 건설부동산 그룹 변호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학폭지분심의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3		서울	안전, 환경, 공공의 이익, 기타 공공의 이익	▪ (전문분야자격)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 세무사, CCIM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서울산업산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4		전북	모든 분야	▪ 변리사,세무사 ▪ 완주군, 김제시, 전안군 마을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인 ▪ 전북교육청 및 전북도의회 고문변호사,전주완산경찰서 및 덕진경찰서 (전도심사위원) 수사민원, ▪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5		서울	기타 공공의 이익,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실무수습 제도개선 TF 부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마해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국방부(군범죄, 유족) 피해자국선변호인 ▪ 서울은수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6		서울	모든 분야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시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 ▪ 서울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3]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프로세스

[그림 4]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수당 청구 및 지급 업무 흐름도

(자문변호사)	수당청구(수당신청서, 증빙자료 등 첨부)
⬇	
(◎◎◎◎과)	접수 및 담당부서 전달
⬇	
(신고유형별 담당부서)	부서 담당자 접수 및 검토
⬇	
(자문변호사 운영실무심의위원회)	수당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신고유형별 담당부서)	수당 지급(사건 종료 후)

※ 신고유형별 수당지급 담당부서

유 형	담당부서	담당업무 분야
공익신고	◎◎◎◎과	• 공익신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질의 • 비실명 대리신고(공익신고) 자문수당 지급
부패신고	☆☆☆☆과	• 부패신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질의 • 비실명 대리신고(부패신고) 자문수당 지급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관련 법령 및 제도 질의 • 비실명 대리신고(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자문수당 지급
청탁신고	□□□□과	• 청탁신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질의 • 비실명대리신고(청탁신고) 자문수당 지급
행동강령신고	■■■■과	• 행동강령신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질의 • 비실명대리신고(행동강령 신고) 자문수당 지급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기준」(이하 '조력비용 지급기준'이라 한다.) 은 자문변호사 구성 및 운영,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2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각 기수별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위원회 홈페이지에 성명과 이메일주소가 공개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업무를 임기 2년동안 수행한다. 이후 연임여부는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대리업무 수행 실적 및 조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이하 생략)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이하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임기)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업무 수행 실적 및 조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업무) ①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한정한다.

1.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
2. 대리신고의 비실명 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3.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에서의 대리(자료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4.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처리

제6조(법률상담 및 안내) ①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토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이하 생략)

제7조(대리신고) ①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1. 제3조에 따른 연임 대상 우수 자문변호사의 선정
2. 제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호에 따른 해촉은 제외한다)
3. 제7조의3에 따라 대리업무를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의 선정
4.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중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문변호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지급은 「조력비용 지급기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법률상담 종료 및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이내에 위원회로 수당을 청구하며, 위원회는 해당 수당 청구건에 대해 「조력비용 지급기준」 [별표1] 법률상담 수당지급 기준, [별표2] 대리신고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담당자 검토 및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이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 사건 종료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3(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0조(수당 지급) ①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사·수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수사·쟁송절차의 대리(공익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공익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② 자문변호사는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한 제5조의 법률상담, 대리신고, 조사·수사·쟁송절차의 대리,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가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자문변호사 수당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수당 지급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3조(수당 지급 신청) 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수당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2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1.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경우(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포함한다.)
2.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대리하여 참석 등 도움을 준 경우
3.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
4.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

제5조(법률상담 수당)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률상담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아닌 유선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여 법률상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 수당은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제6조(법률상담 수당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법률상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 메일 목록이나 전화 목록만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2. 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 아닌 상담자의 요청 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경우
4.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요청 건에 대하여 단순 안내한 경우

제7조(대리신고 수당)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개선 필요 >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 중 128명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한 건은 [표 1]과 같이 총 358건이다. 전반적으로 감사대상기간동안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 신청 건수는 [표 1]과 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 감사대상기간 중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신청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11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6월	계
계	**16건**	**60건**	**103건**	**125건**	**54건**	**358**
법률상담	8건	25건	53건	83건	42건	211
대리신고	8건	35건	50건	42건	12건	147

(부서별 지출 현황 총합 재가공)

또한, [표 2]에서 2023년~2024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총 100명의 자문변호사 중 법률상담 또는 대리신고 수당을 신청한 자문변호사 수는 2022년 27명 대비 2023년 38명, 2024년 30명으로 각각 33%, 10%정도 증가하였다.

[표 2] 감사대상기간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중 수당신청 인원

(단위: 명)

구분	2021.11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6월	계
계	12명	27명	38명	30명	21명	128[3]
법률상담	7명	12명	24명	23명	15명	81
대리신고	7명	20명	26명	20명	10명	83

(보호보상정책과)

전체 자문변호사 중 약 30~40%에게 수당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약 60~70명의 자문변호사는 법률상담 또는 대리신고 수당신청 실적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당을 신청한 자문변호사 중 수당신청 건수는 평균적으로 자문변호사 1명당 5건 미만에 이르지만, 일부 자문변호사가 10건 이상 신청하는 등 쏠림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표 3]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별 수당신청 현황

(단위: 명)

구분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20건 미만	20건 이상	계
계	**60명**	**5명**	**3명**	**1명**	**69명**
2023년	34명	2명	2명	-	38명
2024년	26명	3명	1명	1명	31명

3)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중복으로 수행한 경우를 제외한 수당신청 인원의 합계이다.

상담자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자문변호사의 연임여부는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대리업무 수행 실적 및 조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적이 없는 자문변호사들의 임기(2년) 이후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60~70명의 자문변호사들 중 참여 의지가 강한 변호사들을 위한 홈페이지상 성명 가나다순 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부 특정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이나 대리신고가 쏠리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역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인원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서울·경기권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도 확인된다. 특히 강원권과 제주도의 경우, 2023~2024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지역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인원

(단위: 명)

구분	서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	계
2021년	77명	6명	2명	4명	6명	4명	1명	100명
2022년	74명	5명	2명	4명	9명	5명	1명	100명
2023년	80명	5명	-	3명	8명	4명	-	100명
2024년	73명	11명	-	5명	6명	5명	-	100명
2025년	58명	18명	-	6명	11명	6명	1명	100명

(자료 : 보호보상정책과)

비록 비실명 대리신고 법률상담 또는 대리신고가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상담 이후 신고자가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지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 지역별 변호사 분포 현황

(단위:명)

구분	서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	계
2025년	29,023 (76.3%)	3,085 (8.1%)	229 (0.6%)	1,248 (3.3%)	3,123 (8.2%)	1,154 (3.0%)	201 (0.5%)	38,063 (100%)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 지급의 일관성 부재 >

법률상담 수당의 경우, 「조력비용 지급기준」[별표 1] 에 따라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한 경우와 대리신고없이 법률상담만 진행한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별표 1] 법률상담 수당 지급 기준 일부 수정

구 분	지 급 절 차
㈎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 진행	ㅇ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함
㈏ 대리신고 없이 법률상담 후 종결	ㅇ 신고자와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내용 제출

[표 5]를 살펴보면, 대리신고없이 법률상담만 진행한 건이 총 211건(58.9%)으로 전체 수당지급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조력비용 지급기준」제4조 내지 제5조는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만 실무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신고없이 법률상담만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무심의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5] 감사대상기간 중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지급 건수

(단위: 건)

구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계	
	법률 상담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대리 신고	법률 상담	대리 신고
계	**36**	**14**	**24**	**19**	**52**	**10**	**81**	**95**	**18**	**9**	**211**	**147**
2021.11월~	-	-	-	-	-	-	8	8	-	-	**8**	**8**
2022년	4	2	3	1	3	1	15	31	-	-	**25**	**35**
2023년	7	7	5	6	23	5	16	29	2	3	**53**	**50**
2024년	16	5	13	10	15	3	25	19	14	5	**83**	**42**
~2025.6월	9	-	3	2	11	1	17	8	2	1	**42**	**12**

(자료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담당부서)

이로 인해 대리신고없이 법률상담만 진행한 경우 「조력비용 지급기준」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실무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수당 지급 담당자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표 6]와 같이 수당지급 담당자별 개별적 판단으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무심의회를 통해 수당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증빙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표 7]과 같이 실무심의회 검토없이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고 사후에 실무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법률상담 수당(4건) 지급여부 결정

연번	구분	신고유형	상담일 (신고접수일)	자문변호사	상담(신고) 내용	심의결과
1	법률상담수당	ㅇㅇ신고	2024.11.14	ㅇㅇㅇ	*****	법률상담 수당 5만원 지급
2	법률상담수당	ㅇㅇ신고	2024.11.22.	ㅇㅇㅇ	*****	법률상담 수당 5만원 지급
3	법률상담수당	ㅇㅇ신고	2024.12.15.	ㅇㅇㅇ	*****	미지급
4	법률상담수당	ㅇㅇ신고	2024. 9.23.	ㅇㅇㅇ	*****	미지급

(자료 : 2024년 제1회 실무심의회 심의 결과보고서)

한편 [표 7]과 같이 사후에 보고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내용을 다수의 자문변호사를 선택하여 중복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우, 중복된 법률상담을 진행한 자문변호사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법률상담 수당 집행 내역

연번	구분	신고유형	상담일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내용	지급액
1	법률상담수당	○○신고	2025.01.16	가	ㅁㅁㅁ	5만원(1회)
2	법률상담수당		2025.01.17.	나		5만원(1회)
3	법률상담수당		2025.01.19.	다		5만원(1회)
4	법률상담수당	●●신고	2024.12.27.	라	△△△	5만원(1회)
5	법률상담수당		2024.12.27.	마		10만원(2회)
6	법률상담수당		2024.12.27.	바		10만원(2회)

(출처 : 2025년 제1회 실무심의회 심의 결과보고서)

이러한 중복상담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원인은「조력비용 지급기준」에 중복상담과 관련한 수당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신고자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문변호사 다수를 선택하여 이메일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관부서는 중복상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담 전에 중복상담에 대한 유의사항을 고지 및 홍보 등 노력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단순 고지나 홍보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중복상담 발생을 막을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위원회 내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자가 무분별하게 다수의 변호사를 선택하여 중복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 ◎◎◎◎과장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중 특정 변호사들에게 상담 등이 몰리거나 특정지역에 자문변호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무분별한 중복상담을 피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시 특정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정 변호사로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에 대한 쏠림현상 해결 및 중복지급 방지 등 일관성 있는 상담 수당 지급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참고] 중복상담에 대한 유의사항 및 카드뉴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 요구

제 목 비전자 신고기록물 기록관 이관 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과,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과, ▲▲▲▲과, ▽▽▽▽과, ▼▼▼▼팀은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비전자 신고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고처리결과에 따라 보존기간[4]을 설정하여, 소관부서에서 2년의 범위내에서 보관 후 [그림 1]과 같이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그림 1]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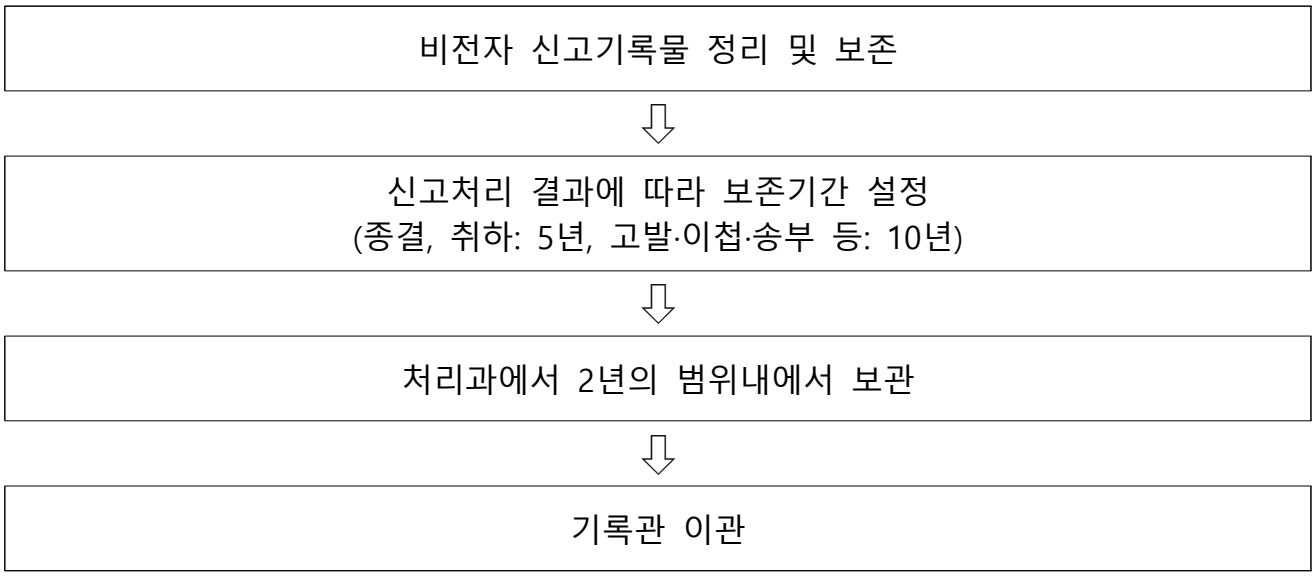

4) 종결, 취하의 경우 5년, 그 외 고발·이첩·송부 등의 경우 10년으로 설정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9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이하 ‘기록관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다. 각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관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2조(신고기록물의 보존)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43조(보존기간)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이첩·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이하 생략)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이관・보존절차)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2조(신고기록물의 보존)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43조(보존기간)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이첩·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이하 생략)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이관・보존절차)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8조(공익신고기록물의 보존)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를 마친 후 공익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별지14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한 후 공익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28조의2(보존기간) ①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이첩·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②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29조(이관・보존절차) ①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보존 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이관 명세서와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공익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따라서 각 신고사건이 종결된 경우, 종결된 다음해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 지연 >

2023년~2024년 신고기록물 이관 목록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총 4,624건의 비전자 신고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표 1] 2023년~2024년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단위: 건)

부서명	지연 여부	소계	사건 유형별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취하 종결	이첩	송부	재조사	기각 각하
△△△△과	지연	150	150	-	-	-	-
	준수	737	737	-	-	-	-
	소계	887	887	-	-	-	-
▲▲▲▲과	지연	46	24	8	12	-	2
	준수	244	187	15	36	-	6
	소계	290	211	23	48	-	8
▽▽▽▽과	지연	374	17	207	150	-	-
	준수	1,012	368	54	582	-	8
	소계	1,386	385	261	732	-	8
▼▼▼▼팀	지연	6	-	3	3	-	-
	준수	2,056	234	338	1,410	7	67
	소계	2,062	234	341	1,413	7	67
합 계	지연	575 (12.4%)	191 (11.1%)	217 (34.7%)	165 (7.5%)	-	2 (2.5%)
	준수	4,049 (87.6%)	1,526 (88.9%)	407 (66.3%)	2,028 (92.5%)	7 (100%)	81 (97.5%)
	소계	4,624 (100%)	1,717 (100%)	624 (100%)	2,193 (100%)	7 (100%)	83 (100%)

(자료 출처: 심사보호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32조 및 「기록관 운영규정」제9조에 따르면, 2023년 이관 대상은 2020년이후에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2021년~2022년의 범위내에서 처리과에서 보관된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 필요가 있는 경우,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2023년~2024년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관된 4,624건의 신고기록물 중 지연된 신고기록물은 575건(12.4%)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신고기록물에 대한 연장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2023년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단위: 건)

부서명	지연 여부	소계	사건 유형별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취하 종결	이첩	송부	재조사	기각 각하
△△△△과	지연	-	-	-	-	-	-
	준수	403	403	-	-	-	-
	소계	403	403	-	-	-	-
▲▲▲▲과	지연	-	-	-	-	-	-
	준수	-	-	-	-	-	-
	소계	-	-	-	-	-	-
▽▽▽▽과	지연	106	13	71	22	-	-
	준수	251	97	29	125	-	-
	소계	357	110	100	147	-	-
▼▼▼▼팀	지연	1	-	-	1	-	-
	준수	1,477	142	231	1,055	3	46
	소계	1,478	142	231	1,056	3	46
합 계	지연	107	13	71	23	-	-
	준수	2,131	642	260	1,180	3	46
	소계	2,238	655	331	1,203	3	46

(자료 출처: 심사보호국)

[표 3] 2024년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단위: 건)

부서명	지연 여부	소계	사건 유형별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취하 종결	이첩	송부	재조사	기각 각하
△△△△과	지연	150	150	-	-	-	-
	준수	334	334	-	-	-	-
	소계	484	484	-	-	-	-
▲▲▲▲과	지연	46	24	8	12	-	2
	준수	244	187	15	36	-	6
	소계	290	211	23	48	-	8
▽▽▽▽과	지연	268	4	136	128	-	-
	준수	761	271	25	457	-	8
	소계	1,029	275	161	585	-	8
▼▼▼▼팀	지연	5	-	3	2	-	-
	준수	579	92	107	355	4	21
	소계	584	92	110	357	4	21
합 계	지연	469	178	147	142	-	2
	준수	1,918	884	147	848	4	35
	소계	2,387	1,062	294	990	4	37

(자료 출처: 심사보호국)

특히 ▲▲▲▲과의 경우, [표 2]와 같이 2023년에 이관할 비전자 신고기록물이 없다고 기록관에 회신[5]하였지만, [표 3]과 같이 2024년에 총 46건의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을 지연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5) 2023년 이관 대상 비전자 신고기록물을 2022년에 361건, 2024년에 229건을 이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 4]와 같이 사건유형별 지연된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현황을 살펴보면, 취하·종결 191건(33.2%), 이첩 217건(37.7%), 송부 165건(28.7%), 재조사 0건(0%), 기각·각하 2건(0.3%)로 나타났다.

[표 4] 2023년~2024년 사건유형별 지연된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단위: 건)

부서명	소계	사건 유형별 신고기록물 이관 현황				
		취하 종결	이첩	송부	재조사	기각 각하
△△△△과	150	150	-	-	-	-
▲▲▲▲과	46	24	8	12	-	2
▽▽▽▽[6]과	373	17	206	150	-	-
▼▼▼▼팀	6	-	3	3	-	-
합 계	575 (100%)	191 (33.2%)	217 (37.8%)	165 (28.7%)	-	2 (0.3%)

(자료 출처: 심사보호국)

▽▽▽▽과의 경우 다른 부서와 달리 이첩·송부 사건의 경우, 소송·환수 등의 사유로 최종 결과 통지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2조에 따른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대한 시점[7]을 이첩·송부 후 처리결과 등록 및 통지시점(B)으로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신고사건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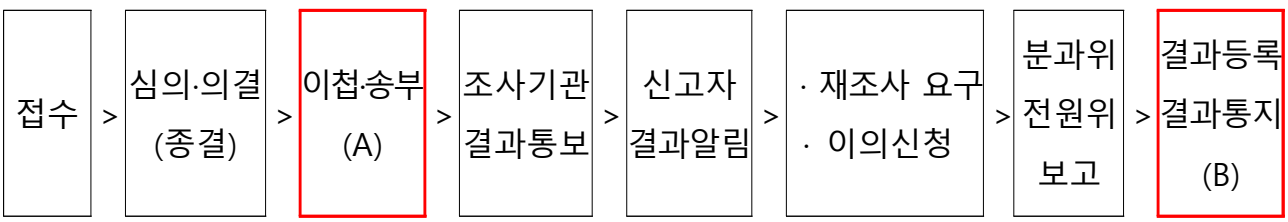

6) 해당 부서는 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시점을 이첩·송부일로 보지 않고, 이첩·송부 후 결과 통지까지 받은 날로 해석하여, 이첩(지연 59건, 준수 202건)과 송부(지연 42건, 준수 690건) 유형에 대한 지연 101건 및 준수 892건으로 소명하였다.

7) 다른 부서의 경우, 이첩·송부일(A)로 해석하여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대한 시점을 이첩·송부 후 처리결과 등록 및 통지시점(B)으로 해석했다면, 기록물 이관목록 제출 시 [그림 2]「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별지 34호] 서식에 따른 사건처리일자(A)이외에 최종 처리결과 등록 및 통지일자(B)를 추가적으로 작성했어야 했다.

[그림 2]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34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4호서식]

신고기록물 이관목록

인 계 연 월 일 : 20 . . .

이관담당자 직·성명 : (인)

인수담당자 직·성명 : (인)

연번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제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보존 기간	신고처리 조사관명	기록인계 조사관명	쪽수

2024년에 기록관에 제출한 기록물 이관목록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처리결과에 따른 처리일자(A)만 적어서 기록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2024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기록물 이관 목록

생산부서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공공재정환수제도과)
이관연도 : 2024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존기간	신고처리 조사관명	기록인계 조사관명	쪽수	수량	공개 여부	비공개사유	비고(병합 사건은 상단의 사건철에 합철)	상자 번호

따라서 ▽▽▽▽과는 이첩·송부 사건의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제42조에 따른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대한 시점을 이첩·송부 후 처리결과 등록 및 통지시점(B)으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기록물 이관목록에서는 같은 규정 [별지 34호] 서식에 따라 사건처리일자(A)만 작성하여 제출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보존기간 설정 미준수>

각 신고사건 운영지침 개정사유인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보존기간 설정 준수여부[8]를 살펴보면, ▲▲▲▲과의 경우 [표 5]와 같이 사건처리결과에 따른 보존기간을 잘못 설정한 5건이 확인되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처리결과가 기각인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처리결과가 기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설정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5] 2024년 ▲▲▲▲과 신고기록물 이관 목록 중 일부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존기간
1	ㅇㅇㅇㅇ	2020.9.18.	*****	기각	2020.10.15.	5년
2	ㅇㅇㅇㅇ	2021.2.10.	*****	기각	2021.3.8.	5년
3	ㅇㅇㅇㅇ	2021.6.1.	*****	기각	2021.6.24.	5년
4	ㅇㅇㅇㅇ	2022.4.18.	*****	기각	2022.5.10.	5년
5	ㅇㅇㅇㅇ	2022.6.20.	*****	기각	2022.7.22.	5년

(자료 : 부패심사과)

▽▽▽▽과의 경우, [표 6]과 같이 실제 사건처리결과는 이의신청 기각임에도 불구하고, 종결로 잘못 표기한 4건의 기록물이 확인되었다.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처리결과가 종결인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5년, 기각인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결과가 기각임에도 불구하고 종결로 잘못 표기하여 실질적으로는 처리결과(기각)와 보존기간(10년)이 맞게 설정되었지만, 형식적으로 처리결과(종결)와 보존기간(10년)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8) △△△△과는 사건접수부서로 사건처리결과가 취하·종결만 존재하여 제외하였다.

[표 6] 2024년 ▽▽▽▽과 신고기록물 이관 목록 중 일부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존기간
1	ㅇㅇㅇㅇ	2023.1.13.	*****	종결	2023.3.3.	10년
2	ㅇㅇㅇㅇ	2023.3.16.	*****	종결	2023.9.8.	10년
3	ㅇㅇㅇㅇ	2023.5.16.	*****	종결	2023.6.19.	10년
4	ㅇㅇㅇㅇ	2023.9.1.	*****	종결	2023.9.25.	10년

(자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팀의 경우, [표 7]과 같이 사건처리 결과에 따른 보존기간이 잘못 설정된 것이 없었지만, 사건처리(종결)일자가 누락되어, 정확한 보존기간을 알수 없는 기록물 729건이 확인되었다.

[표 7] 2023년 ▼▼▼▼팀 신고기록물 이관 목록 중 일부

연번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존기간
1	ㅇㅇㅇㅇ	2020.1.3.	*****	송부	-	10년
2	ㅇㅇㅇㅇ	2020.1.10.	*****	송부	-	10년
3	ㅇㅇㅇㅇ	2020.2.5.	*****	이첩	-	10년
⋮	⋮	⋮	⋮	⋮	⋮	⋮
729	ㅇㅇㅇㅇ	2020.2.19.	*****	송부	-	10년

(자료 : 공익심사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28조의2에 따르면,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신고사건의 처리일자, 즉 종결일자에 따라 기록물의 실제 보존기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첩·송부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종결 일자가 2020년이라면, 보존기간은 10년 뒤인 2031년이지만, 처리일자가 2021년이라면, 보존기간은 2032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처리일자를 정확히 기록했어야 했다.

하지만, ▼▼▼▼팀은 총 729건의 이관대상 신고기록물의 사건처리일자를 누락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신고기록물별 누락된 처리일자를 작성하여 정확한 보존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건처리결과에 맞게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사건처리일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향후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장, ▽▽▽▽과장는 잘못 표기된 사건처리 결과 또는 보존기간을 정정하시고, ▼▼▼▼팀장은 사건처리일자가 누락된 기록물에 대해 조속한 시일안에 사건처리일자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재송부하시고,**(시정)** △△△△과장, ▲▲▲▲과장, ▽▽▽▽과장, ▼▼▼▼팀장은 향후 비전자 신고기록물 이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 요구

제　　목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미흡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그림 1]과 같이 전임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후임자는 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업무를 인수하며, 인계자의 상급자(부서장, 국장 등)는 인계·인수 과정에 입회하여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한다.

[그림 1] 업무 인계·인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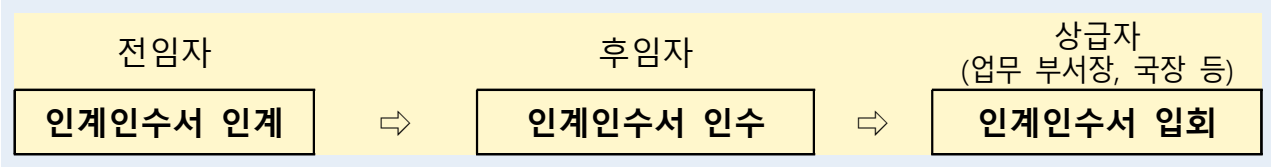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 중 심사보호국 7개 부서에서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및 서면 등을 통해 총 296건의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다. 인계인수서의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계·인수하는 업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그림 2]「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일부 발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업무 인계·인수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 동안 인계인수된 건에 대해 인계인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었다.

[그림 3] 인계인수시스템 화면

[그림 4] 인수·인계·입회 완료 화면 예시

[그림 5] 인수·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그림 6] 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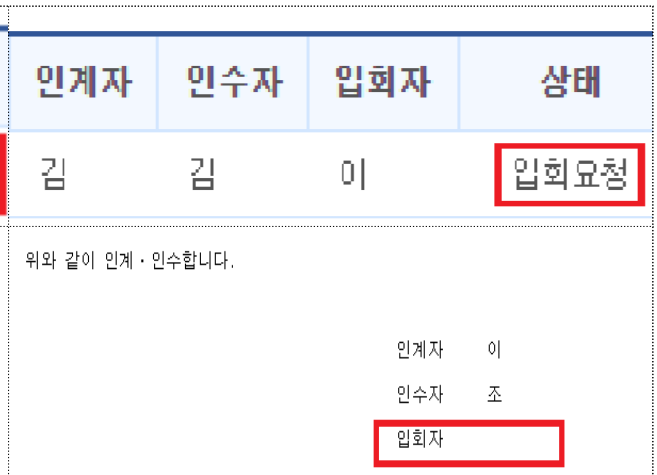

인계인수시스템 및 부서별 업무분장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인계인수시스템상 인계·인수·입회가 완결되지 않은 건수는 총296건 중 97건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인수단계 미결 20건, 입회단계 미결 26건,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 51건이 확인되었다.

[표 1] 감사대상기간의 인계·인수·입회 현황

(단위: 건)

구분		인계인수 건수	입회 완료 건수	소계	인수미결 건수	입회미결 건수	기타 (서면 작성 등)
합계		296 (100%)	199 (67.2%)	97 (32.8%)	20	26	51
심사 보호국	☆☆☆☆과	34	28	6	1	4	1
	★★★★과	20	11	9	4	2	3
	○○○○과	78	67	11	2	3	6
	●●●●과	22	12	10	2	7	1
	◎◎◎◎과	61	41	20	5	4	11
	◇◇◇◇과	29	18	11	-	4	7
	◆◆◆◆팀	52	22	30	6	2	22

(자료 출처: 부서별 업무분장 및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 전보 등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팀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변경, 전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요구

제　　목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같은 영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23.3.2.이전 단가)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제2호 (1호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20,000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23.3.2.이후 단가)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1호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1호: 장·차관, 고위공무원 가~나급, 1급, 2~3급(국장급만) 보수를 받는 공무원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같은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 조정사유)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에 따르면 위 규정상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 중 출장일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심사보호국 4개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출장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지 않아 [표 1]과 같이 총 23건(422,500원)의 출장일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출장식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심사보호국 7개 부서에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음에도 [표 2]와 같이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하지 않은 총 62건(461,350원)의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1] 출장일비 부적정 지급 내역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심사보호국	★★★★과	7건	155,000원	· 렌터카 이용 7건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과	9건	197,500원	· 렌터카 이용 9건
	◎◎◎◎과	4건	40,000원	· 렌터카 이용 4건
	◇◇◇◇과	3건	30,000원	· 렌터카 이용 3건
합 계		23건	422,500원	

(자료 출처: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표 2]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심사 보호국	☆☆☆☆과	7건	58,310원	· 업무추진비 사용 7건
	★★★★과	19건	138,23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9건
	○○○○과	16건	118,25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6건
	●●●●과	9건	64,950원	· 업무추진비 사용 9건
	◎◎◎◎과	11건	81,61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1건
합 계		62건	461,350원	

(자료 출처: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출장여비 정산 시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를 반납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출장여비 정산 시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출장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반납 조치하고, ②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요구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각 부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 등으로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급단가

ㅇ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9] 이내로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 중 특근매식비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7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및 유연근무자 중 정규근무시간 내 출퇴근한 자 등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91건(655,000원)의 특근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내역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심사 보호국	☆☆☆☆과	9건	63,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8건
	★★★★과	2건	14,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9) '25.1.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으로 특근매식비 지급단가는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됨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심사 보호국	○○○○과	6건	44,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4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1건
	●●●●과	9건	71,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3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4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2건
	◎◎◎◎과	30건	210,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4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15건
	◇◇◇◇과	6건	50,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6건
	◆◆◆◆팀	29건	203,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26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3건
계		91건	655,000원	

(자료 출처: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및 e사람 시스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연근무, 개인용무 시간 제외 미반영 등에 따라 초과근무 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5건(60.4%), 유연근무 실시자 중 정규근무시간 내 출퇴근한 자에게 지급한[10] 경우가 7건(7.7%), 출장식비를 중복 지급한 경우 등이 29건(31.8%)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 지급 시 대상자의 출퇴근 기록 및 유연근무 실시내역, 근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 유연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정규근무시간(9시～18시)내에 출퇴근한 경우 특근매식비을 지급할 수 없음. 예를 들어, 7시부터 15시까지 유연근무 후 17시에 퇴근지정하였을 시 유연근무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18시 이전에 퇴근하였으므로 특근매식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는 한편, 특근매식비 지급 시 초과근무 2시간 초과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특근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팀장은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고, ②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와 출장식비 지급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 요구

제　　목　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영수증 실명서명 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각 부서는「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등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며,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카드 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없거나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Ⅱ. 공통지침)

카드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서명이 출력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서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여백에 사용자명 별도 기재)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1. 11월 ~ 2025. 6월)의 정부구매카드 영수증 증빙 등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영수증에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가 총 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상 사용자 실명 서명 누락 현황

구 분	부서명	건수	사용금액	비고
심사보호국	☆☆☆☆과	1건	45,000원	· 업무추진비 1건
	★★★★과	1건	120,500원	· 일반수용비 1건
	○○○○과	2건	999,480원	· 일반수용비 1건 · 업무추진비 1건
	●●●●과	1건	25,800원	· 업무추진비 1건
	◆◆◆◆팀	1건	100,000원	· 업무추진비 1건
계		6건	1,290,780원	

(자료 출처: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위와 같이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팀장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자가 반드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개선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모 범 부 서　☆☆☆☆과, ★★★★과, ○○○○과

모 범 내 용

심사보호국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각종 부패자료 수집 · 평가 및 실태조사,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 · 관리 · 분석 · 통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심사보호국 소속 3개 부서(☆☆☆☆과, ★★★★과, ○○○○과)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표 1] 심사보호국 25년 실태조사 추진사항

조사부서	실태조사 사항
☆☆☆☆과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과	수산종자 방류사업 실태조사
○○○○과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비용 보조사업 실태조사

☆☆☆☆과는 일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로 노트북, 태블릿PC 등 사적 물품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함에 따라 부패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하였다.

[표 2] ☆☆☆☆과 실태조사 개요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에서 **교육훈련비**(자기계발비*)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 **고가의 사적물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 포착

○ 조사 대상 : 339개 전 공공기관(327개) 및 부설기관(12개)을 대상
- 기초자료*(2024년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 검토하여 **조사대상 10개 기관 최종 선정**

○ 조사 내용 : 교육훈련비로 전자기기 등 **사적 물품 구입 여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적정 여부** 등

그 결과, 교육훈련비로 사적 물품을 구입·지원하는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점검과정에서 어학·자격증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은 후 미응시, 이직을 위한 수강 지원 등 부적절한 교육훈련비 집행도 확인되는 등 교육훈련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표 3] ☆☆☆☆과 실태조사 결과 요약

✔ 교육훈련비 집행 부적정 확인: **25억 2,852만 원(9개 기관)**
✔ 사적 물품 구입 의심 내역 자료제출 거부: 1**0억 4,700만 원(2개 기관)**
✔ (기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이행 부적정(1개 기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기관장 주관 **언론브리핑('25.9.)**

A기관 사적 취득 물품 사진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과는 2024. 8월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조사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입찰에 동원해 입찰을 방해하고 허위로 납품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부패행위가 일부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임을 확인하여 실태조사 추진하였다.

[표 4] ★★★★과 실태조사 개요

○ 추진 배경 :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 **부패행위 신고접수**
○ 조사 대상 : **22개 기관**의 입찰·낙찰자 정보('18.1.~'24.6. 기간)를 대상
○ 조사 내용 : **특수관계업체를 동원 여부**, 자연종자를 포획 또는 구입하여 **방류한 행위 여부 등**

그 결과, 특수관계업체를 동원하여 중복입찰, 인공종자 생산조건을 어기고 자연종자를 포획 또는 구입하여 방류한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또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불완전한 데이터베이스 보완', '인공종자 확인제도 강화' 등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소관부처에 권고하여 유사 부패행위의 구조적 재발 방지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5] ★★★★과 실태조사 결과 요약

✔ 특수관계업체를 동원하여 중복입찰 : **80건 103억원**
✔ 인공종자 생산조건을 어기고 자연종자를 포획 또는 구입하여 방류 : **27건 68억원**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기관장 주관 **언론브리핑('25.7.)**

특수관계업체 동원 구조도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과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정부 스마트시티 조성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예산 낭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표 6] ○○○○과 실태조사 개요

○ 추진 배경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 조사 대상 : '22~'24 사업 선정된 17개 지방정부 중 보조금 집행 기초자료 검토하여 **6개 지방정부** 조사대상 선정

○ 조사 내용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보조사업자의 **업무 재위탁 과정 특혜발생** 여부, **예산 목적외 사용** 등 집행 적정성 여부, **성과물 사후관리** 실태 등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 임의변경(선정절차 불투명), 민간 위탁용역 업체 사전내정(특혜 계약), 보조사업 인건비 횡령, 보조사업 성과물 방치 등 보조사업 예산 부실집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참여인력 관리·감독 방안, 인건비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건비 횡령 의혹 건 등은 수사기관에 이첩(자료통보) 하였다.

[표 7] ○○○○과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 **총 218억 원 규모**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특혜**, 보조사업자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부실집행** 적발

✔ 실태조사 결과 **언론브리핑('25.12.)**

보조사업 전기자전거 하수처리장 방치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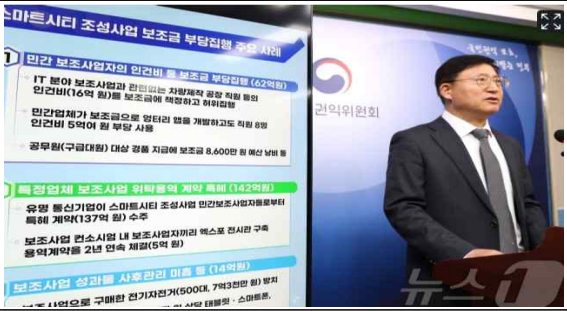

심사보호국 소속 3개 부서에서 추진한 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예산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대규모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 ★★★★과,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공기관 실무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법령설명회’ 추진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모 범 부 서　☆☆☆☆과, ○○○○과, ●●●●과

모 범 내 용

심사보호국은 2024년부터 공공재정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포털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심사보호국 소관 제도에 대한 기관별 실무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법령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부서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개별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예산 중복집행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4년부터 심사보호국 소속 3개 부서(☆☆☆☆과, ○○○○과, ●●●●과)가 관련 예산, 업무 분장 등을 협업하여 통합형 법령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는 민원·감사 업무 담당자, 제도 운영 담당자, 사업부서 실무자 등 외부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법령설명회를 추진하여 심사보호국 소관 제도에 대한 현장·실무자 중심의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편성한 교육자료 공유 및 교육 세션별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별 애로사항과 해석상 쟁점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제도담당자-공공기관 실무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표 1] 권역별 법령설명회 개요

○ 교육 대상 : 민원·감사 업무 담당자, 제도 운영 담당자, 사업부서 실무자 등

○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학교

○ 교육 방법 및 시간 : **설명회 개최 / 2시간 30분**

○ 교육 내용 :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보호·보상 실무사례, 청렴포털 소개 및 이용방안 안내**

○ 강의 진행 : 심사보호국 **제도별 담당자**

<호남지역 법령설명회>	<강원권역 법령설명회>
*'24.6.1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5.5.2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홀 대강당

2024년부터 추진한 법령설명회는 지역 단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4년에는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644개 기관, 1,162명이 참석하였으며, 2025년에는 5개 권역에서 총 806개 기관, 1,200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심사보호국 소관 제도 전반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공하고, 유사 사안에 대한 처리 방향의 편차를 줄이는 등 기관 실무 역량 강화와 제도 운영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3개 부서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통보(모범사례)]**

[참고] 권역별 법령설명회 개최 내역

<2024년 보호보상.공공재정.취업제한 법령 설명회>

지역	일정	참석자	교육장소
대전·충청·세종	3.21.(목) 13:30 ~ 15:50	148개 기관, 271명	KT대전인개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강원	4.18.(목) 14:00 ~ 15:50	60개 기관 162명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제주	4.25.(목) 09:40 ~ 12:30	28개 기관, 76명	제주혼디누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남	5.23.(목) 13:30 ~ 16:00	130개 기관, 222명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부산광역시 남구)
수도권	5.30.(목) 13:30 ~ 16:00	195개 기관, 284명	구로구민회관 대강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남	6.13.(목) 14:00 ~ 16:30	83개 기관, 147명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 보호보상.공공재정.취업제한 법령 설명회>

지역	일정	참석자	교육장소
대전·충청·세종	3.25.(화) 14:00 ~ 16:30	137개 기관, 227명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전라·광주	4.10.(목) 14:00 ~ 16:30	145개 기관, 208명	국민연금공단 기금관 컨퍼런스홀(전주시 덕진구)
경상·부산·대구	4.22.(화) 14:00 ~ 16:30	180개 기관, 281명	부경대학교 대학극장(부산광역시 남구)
강원	5.13.(목) 14:00 ~ 16:30	90개 기관, 184명	건강보험공단 본부 대강당(원주시 반곡동)
서울·경기·인천	5.27.(화) 14:00 ~ 16:30	254개 기관, 300명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각급기관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강화 지원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모 범 부 서　○○○○과

○○○○과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이행실태 점검, 환수제도 관련 교육·컨설팅 및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309개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적발 및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권고와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자발적인 부정수급 예방·적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는 환수 제재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의 적정성 여부, 사후관리 실태 등 전 과정을 함께 점검·확인하여 기관별 취약지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제재처분 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전년도 6회에서 16회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관별 제재·환수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외부 신고나 사후 적발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각급기관이 사전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제재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점검 실시율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환수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신설(위원장상 2점)하여 담당자 사기진작과 적극적 제도 이행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법 개정('24.9)에 따라 일선기관 들이 사례 적용·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예방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교육을 전년도 11회에서 24회로 확대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이 직접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각급기관 고위층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년도 청렴 노력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표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기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각급기관 제도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권해석 및 신고사건 사례를 활용한 '부정수급 골든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그 결과, 전년대비 교육생 수가 1.92배 증가했으며, 컨설팅 참석 기관 중 58.6%에서 노력도 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전 행정기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각급기관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강화 지원으로, 2025년 하반기 제재처분 점검기준 전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액은 704억 원으로, 2024년 하반기 대비 164억 원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현장교육 실적

< 교육유형별 횟수 및 참석인원 >

구분	통합교육	맞춤교육	컨설팅	워크숍	합계
횟수	5	24	3	1	**33회**
인원	1,200	3,331	72	54	**4,6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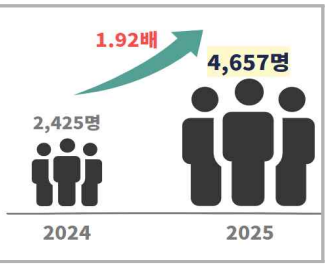

현장교육 실적 및 성과

충북도 맞춤형 컨설팅(5.26)	강원권 법령설명회(5.13)	전국 지자체 워크숍(9.4)

성과

- 전년 대비 **교육대상자 92% 증가 (2,425명 → 4,657명)**
- 컨설팅 참석 기관(29개) 중 청렴 노력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노력' 지표 **점수 상승기관 17개(58.6%)**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홍보 강화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모 범 부 서　◎◎◎◎과

모 범 내 용

심사보호국 ◎◎◎◎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하여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조정, 제도 운영, 교육·홍보, 쟁송처리 등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를 총괄 하고,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익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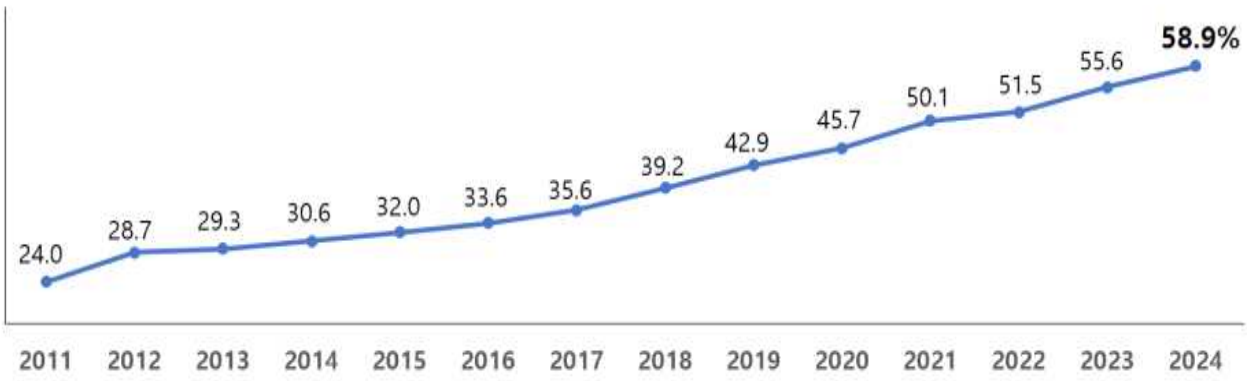

먼저 최근 홍보 경향 및 재미적 요소를 반영하여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을 3편의 시리즈로 제작하여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 게시하였다.

1편은 일상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개('25.4월)하고, 2편은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 안내('25.5월), 3편은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25.6월)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1편	2편	3편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회사에 퍼진 소문, 알고… 조회수 44만회	#신고자보호 #부패신고상담 #공익신고상담 #국민… 조회수 39만회	꽃보다보호, 우리는 권익위 P4(Protection) 조회수 40만회

또한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웹툰형 카드뉴스를 만들어 기관 누리집,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24.8월)하고 홍보 동영상을 KBS, 유튜브, KTX 부패 내부 모니터 등에서 송출('24.12월)하였다.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리플릿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KTX 역사 및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대민 안내실 등에 부착·비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23),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24), 공공기관용 업무 안내서('25)를 제작·배포하여 대국민 대상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포스터	리플릿	업무 안내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은 먼저 민원·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대상으로 2024년부터 개별적 교육으로 인한 일선 기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보호국 소관 주요 반부패 업무 통합 교육으로 실시하여 2024년 총 644개 기관 1,162명, 2025년 총 806개 기관 1,200명이 교육을 참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운영실태 조사,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 등을 통해 빈발·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기관 간담회 및 교육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대상을 확정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설분야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LH 직원 및 민간건설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총 269명이 참석하였고('24.9월), 전북 교육청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총 632명이 참석하였으며('24.10월), 전국 변호사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교육('25.3월)등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업하여 영·유아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신고자 의무 교육 영상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24.11월)하기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